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그룹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의무, 쟁점과 대응 과제

2026. 09. 30.

I. 핵심 요약

2025. 12. 11.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단체와의 협의의무제를 도입하였고, 2026. 12. 31.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8. 3. 그 세부 기준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행정예고안의 골자는 ① 동일 영업표지 가맹점주의 10%(최소 30명)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면 단체 등록, ② 등록단체의 서면 협의요청 시 14일 이내 협의 개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2회 이상 회의 진행, 회의록 3년 보관, ③ 동일 주제 협의가 마치면 180일간 재협의 요청 불가(별개 주제 60일) 등입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점주 측과 국회는 등록 문턱이 높다고, 가맹본부 측은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각각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30명 하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시행령은 규제심사와 10월 국정감사를 거쳐 연내 확정될 전망입니다. 최종안은 등록 요건이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최종안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예고안을 기준으로 협의 대응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 시행령 개정안 및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가. 등록 요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로 구성되고,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최소 30명)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1,000명 기준에 따르면 점포 1만 8,000개 규모 브랜드에는 산술상 최대 18개 단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나. 등록 절차: 신청서, 운영규약, 구성원 명부, 가입 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수행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등록 취소: 가맹점주 명의 도용, 위조·변조 서류 제출로 등록한 경우 외에, 가맹본부가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등 자율적인 단체구성권을 침해하여 구성된 단체도 등록 취소 대상입니다. 이른바 친(親)본부 단체 조성 시도는 단체의 등록 취소에 그치지 않고 가맹본부 자신의 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등록단체와의 협의의무제

- 가. 협의 대상: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광고, 판촉행사 관련 사항 등 거래조건(가맹금, 영업지역, 필수품목의 공급 및 가격 산정 등 핵심 사항 포함)
- 나. 협의 개시: 서면 협의요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개시(기간 내 1회 연장 가능)
- 다. 협의 진행: 원칙적으로 2회 이상 회의(쌍방 합의 시 조기 종료 가능), 회의록 작성 후 협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
- 라. 결과 통보: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주에게 14일 이내 협의 결과 통보
- 마. 참석자: 가맹본부 임직원 및 등록단체 구성원 +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
- 바. 대표성 보완: 가입률 30% 미만 등록단체의 경우 미가입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협의 주제, 단체 의견 등을 공지하는 의견수렴 절차 필요
- 사. 재협의 제한: 협의를 거친 등록단체는 동일 주제 180일, 별개 주제 60일(가맹점 100개 미만 본부는 90일) 동안 재협의 요청 불가
- 아. 복수 단체: 둘 이상의 등록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다수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의(가맹사업법)

3.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가 등록단체의 협의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의무는 충실한 협의에 응하는 것이고,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더 큰 리스크는 협의 거부 그 자체보다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입니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협의가 제도화되면 단체 임원 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점검 강화, 물품 공급 조정 등이 보복성 조치로 문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Ⅲ. 주요 쟁점 및 전망

1. 등록 요건 — 하한 완화 가능성

점주 측과 여당은 가맹본부의 약 88%가 가맹점 30개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30명 하한” 요건이 소규모 브랜드 점주를 원천 배제한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10%만으로는 전체 점주를 대표하기 어렵고 단체 난립을 초래한다고 반박합니다. 공정위 관계자가 하한 완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중소 가맹본부도 등록단체 협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복수 등록단체 — 조정 장치의 공백

가맹사업법은 “다수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 우선 협의” 원칙만 두고 있을 뿐, 어느 한 단체와의 협의가 다른 단체의 재협의 요청까지 제한하는지는 예고안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체 간 요구가 상충할 경우의 조정 기준, 중복 가입 점주의 산정 방식 등도 공백으로 남아 있어 시행 초기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적법한 대리인의 범위와 영업비밀

대리인 조항은 예고안에서 신설되었으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가맹본부 측은 가맹거래사, 단순 수임인은 물론 노동조합, 시민단체까지 협의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신제품 계획, 원가 구조 등 영업비밀 유출 우려도 있어 대리인 자격 제한과 비밀유지 의무의 도입 여부가 최종안의 핵심 쟁점입니다.

4. 재협의 제한기간과 충실한 협의의 기준

점주 측은 180일 재협의 제한을 독소 조항으로 보아 삭제, 단축을 요구하고, 가맹본부 측은 오히려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자료 제공과 설명이 있어야 충실한 협의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형식적 회의 2회만으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5. 공정거래법상 단체협상 담합 적용 제외 논의와의 중첩

정부는 2026. 6. 30. 소기업, 소상공인의 단체협상과 협상 결렬 시 단체행동을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입법 여부와 적용 범위는 미정이나, 두 제도가 결합될 경우 가맹사업법상 협의 요청 → 협의 결렬 → 공동 수령거부 등 단체행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협의 결렬 이후 단계까지 시나리오에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가맹본부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1. 시행 전 준비

- 가. 가맹점 수 대비 등록 가능 단체 수 시뮬레이션 및 기존 점주협의회, 상생협의회 현황 점검
- 나. 협의 전담 조직(TF)과 결재, 권한 위임 체계 확정 — 협의 대표자, 법무, 영업, 구매, 마케팅 참여 범위, 양보 가능 범위의 사전 승인 절차
- 다. 예상 안건별 근거자료 정비 — 필수품목 지정 사유와 공급가격 산정 근거, 광고·판촉비 분담 기준, 영업지역 설정 기준, 계약갱신·중도폐점 위약금 기준
- 라. 협의 시 제공할 정보의 공개 범위 설정 및 비밀유지 약정(참석자, 대리인 서명) 표준안 마련
- 마. 최종 시행령, 고시 모니터링 및 규제심사, 국정감사 단계에서 업계 단체를 통한 의견 개진

2. 협의요청 접수 및 진행 단계

- 가. 요청 단체의 등록 여부, 요청 서면의 적법성, 재협의 제한기간 해당 여부 확인 → 접수일부터 14일 기한 관리(연장 필요 시 기간내 통지)
- 나. 복수 단체 요청 시 구성원 수 확인을 통한 우선 협의 대상 판단, 타 등록단체 참여 요청, 안건 일괄 상정 등 효율적 협의 방안 검토
- 다.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등 대리권 확인, 비밀유지 서약 징구
- 라. 회의록은 쌍방 확인 방식으로 작성하고, 요구 불수용 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충실한 협의의 근거 확보

3. 상시 컴플라이언스

- 가. 단체 가입 강요, 유도 또는 탈퇴 권유 금지 — 현장 슈퍼바이저 대상 교육 필수
- 나. 단체 임원, 활동 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점검 강화, 공급 조정 등 조치 시 객관적 사유의 사전 문서화

V. 결론

협의를무제는 가맹본부가 사실상 단독으로 결정해 온 거래조건을 제도화된 협의 대상으로 바꾸는 변화입니다. 협의요청은 시행일 직후부터 접수될 수 있고, 첫 협의의 선례와 기록이 이후 분쟁과 공정위 조사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현 예고안을 기준으로 대응체계와 근거자료를 먼저 갖추고, 최종안 확정 시 세부 사항을 보완하시기를 권합니다.

관련 구성원

정양훈 구성원변호사

T. 02-3479-7854

E. yanghun.chung@barunlaw.com

이기쁨 구성원변호사

T. 02-3479-2671

E. kipeum.lee@barunlaw.com